

「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4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
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
-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
드러난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
하고, 직권면직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
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,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시험의 공동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- 직권면직 사유 및 결원보충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